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14 호 2018. 8. 17(금)

조 례

남해군조례 제2288호	남해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289호	남해군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조례 제2290호	남해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남해군조례 제2291호	남해군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0
남해군조례 제2292호	남해군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25
남해군조례 제2293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8
남해군조례 제2294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남해군조례 제2295호	남해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남해군조례 제2296호	남해군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남해군조례 제2297호	남해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42
남해군조례 제2298호	남해군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남해군조례 제2299호	남해군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8
남해군조례 제2300호	남해군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남해군조례 제2301호	남해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남해군조례 제2302호	남해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남해군조례 제2303호	남해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80
남해군조례 제2304호	남해군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89
남해군조례 제2305호	남해군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2
남해군조례 제2306호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남해군조례 제2307호	남해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남해군조례 제2308호	남해군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남해군조례 제2309호	남해군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111
남해군조례 제2310호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남해군조례 제2311호	남해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36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153
남해군규칙 제1137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87

공 고

제2018 - 907호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190
제2018 - 908호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96
제2018 - 909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0
제2018 - 909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8
제2018 - 913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설명회 개최공고	214
제2018 - 922호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223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288호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u>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u>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p>

남해군 조례 제2289호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통합지휘소”를 “통합
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총괄·지휘”를 “총괄·조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 본문 중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장”을 “남해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대책본부의 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을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 를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로 하고,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각 호와 같은” 을 “각 호의” 로 하며,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 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대책본부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각 호와 같은” 을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각각 “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6조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하며,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을 각각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실과.소장” 을 “실·과·단·소장”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제1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까지 중 “대책본부의 장” 을 각각 “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12조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제1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16조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총괄·지휘” 를 “총괄·조정 및 지원”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응급의료기관” 을

“응급의료기관 등” 으로 하고, “없는 한” 을 “없으면” 으로 한다.

제19조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대책본부의 장” 을 각각 “대책본부장” 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없는 한” 을 각각 “없으면” 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23조 제목 중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하고, 본문 중 “통합지휘소” 를 각각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제24조 중 “대책본부의 장” 을 “대책본부장” 으로 하고, “통합지휘소” 를 “통합지원본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u>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u>	제명 <u>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u>총괄·지휘</u>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총괄·조정</u> <u>및 지원</u> ----- --- <u>통합지원본부</u> ----- -----.
제2조(정의) <생 략>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u>총괄·지휘</u>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생 략>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u>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u> 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생 략> 5. “ <u>초기대응담당자</u> ”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 ----- <u>총괄·조정 및 지원</u> ----- -----. 2. <현행과 같음> 3. ----- ----- ----- <u>통합지</u> <u>원본부</u> -----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u>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u>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u>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u> -----

남 해 군 공 보

(8) 제 582 호

2018년 8월 17일

<p>한다.</p> <p>1. ~ 5. <생 략></p> <p>6. 신종 <u>전염병</u> 최초 발생 및 법정 <u>전염병</u> 집단발생</p> <p>7. ~ 8. <생 략></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감염병</u> ----- <u>감염병</u> -----</p> <p>7. ~ 8. <현행과 같음></p>
<p>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① <u>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남해군 재난대책본부장은</u>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u>통합지휘소</u>를 구성·운영하며, <u>통합지휘소</u>의 장은 부군수로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u>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u>각 호와 같은</u> 임무를 수행한다.</p> <p>1. ~ 7. <생 략></p> <p>③ <u>대책본부</u>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u>통합지휘소</u>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p> <p>④ <u>대책본부</u>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p>	<p>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u>대책본부장</u> -----</p> <p>-----</p> <p>----- <u>통합지원본부</u> -----</p> <p>----- <u>통합지원본부</u> -----</p> <p>-----.</p> <p>② <u>통합지원본부</u> -----</p> <p>----- <u>각 호의</u>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③ <u>대책본부장</u> -----</p> <p>-----</p> <p>----- <u>통합지원본부</u> -----</p> <p>-----.</p> <p>④ <u>대책본부장</u> -----</p> <p>-----.</p> <p>-----.</p>
<p>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u>대책본부</u>의 장은 <u>통합지휘소</u>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u>통합지휘소</u>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u>한</u>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p>	<p>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u>대책본부장</u> ----- <u>통합지원본부</u> -----</p> <p>-----</p> <p>----- <u>통합지원본부</u> -----</p> <p>-----</p> <p>-----</p> <p><u>없으면</u> -----</p>

<p>한다.</p>	<p>--.</p>
<p>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u>통합지휘소</u>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p> <p>1. 법 제3조제1호 가목에 <u>해당되는</u> 자연재난 : 안전총괄과장</p> <p>2. 법 제3조제1호 나목에 <u>해당되는</u>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u>해당실과.소장</u></p>	<p>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u>통합지원본부</u></p> <p>-----</p> <p>-----.</p> <p>② <u>통합지원본부</u> -----</p> <p>-----</p> <p>-----.</p> <p>1. ----- <u>따른</u> -----</p> <p>-----</p> <p>2. ----- <u>따른</u> -----</p> <p>----- <u>실.과.단.소장</u></p>
<p>제8조(<u>통합지휘소</u> 설치 및 운영계획 통보) ① <u>대책본부</u>의 장은 재난현장에 <u>통합지휘소</u>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u>통합지휘소</u>의 위치, <u>통합지휘소</u>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u>통합지휘소</u>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8조(<u>통합지원본부</u> 설치 및 운영계획 통보) ① <u>대책본부장</u> ----- <u>통합지원본부</u> -----</p> <p>-----</p> <p>-----</p> <p>----- <u>통합지원본부</u> --</p> <p>----- <u>통합지원본부</u> -----</p> <p>-----.</p> <p>② <u>통합지원본부</u> -----</p> <p>----- <u>통합지원본부</u> -----</p> <p>-----.</p>
<p>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u>통합지원본부</u></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u>대책본부</u>의</p>	<p>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u>대책본부장</u>-</p>

<p>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p>	<p>----- ----- ----- ----- -----.</p>
<p>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u>대책본부</u>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u>대책본부</u>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 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u>대책본부장</u> ----- ----- ----- ----- -----.</p> <p>② ----- <u>대책본부장</u> ----- ----- ----- ----- -----.</p>
<p>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p>	<p>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u>통합지원본부</u> ----- ----- ----- -----.</p>
<p>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u>대책본부</u>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u>대책본부장</u> ----- ----- ----- -----.</p> <p>② ----- 없으면 ----- ----- -----.</p>

남 해 군 공 보

2018년 8월 17일

제 614 호 (11)

<p>제14조(통합지휘소의 위치) ① <u>대책본부</u>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u>통합지휘소</u>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u>통합지휘소</u>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u>대책본부</u>장 ----- ----- ----- <u>통합지원본부</u> ----- --.</p> <p>② <u>통합지원본부</u> ----- <u>통합지원본부</u> ----- -----.</p>
<p>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 ----- ----- ----- <u>통합지원본부</u> ----- -----.</p> <p>② <u>통합지원본부</u> ----- ----- -----.</p>
<p>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u>통합지휘소</u>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u>총괄·지휘</u>하여야 한다.</p>	<p>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u>통합지원본부</u> ----- ----- ----- <u>총괄·</u> <u>조정 및 지원</u> -----.</p>
<p>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u>대책본부</u>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u>대책본부</u>장 ---- ----- ----- ----- -----.</p> <p>② ----- ----- ----- <u>없으면</u> ----- -----.</p>

남 해 군 공 보

(12) 제 582 호

2018년 8월 17일

<p>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 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u>대책본부의 장</u>은 현장 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u>응급의료기관</u>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 ----- ----- ----- <u>통합지원본부</u> ----- -----.</p> <p>② <u>대책본부장</u> ----- ----- ----- ----- -----.</p> <p>③ ----- <u>응급의료기관</u> 등 ----- <u>없으면</u> ----- -----.</p>
<p>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u>통합지휘소</u>의 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p>	<p>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u>통합지원본부</u> ----- ----- ----- -----.</p>
<p>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u>대책본부의 장</u>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 한</u>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	<p>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u>대책본부장</u> ----- ----- -----.</p> <p>② ----- ----- ----- <u>없으면</u> ----- -----.</p>
<p>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u>대책본부의 장</u>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u>대책본부장</u> ----- ----- ----- ----- -----.</p>

남 해 군 공 보

2018년 8월 17일

제 614 호 (13)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u>없는</u>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 -----<u>없으면</u>----- ----- -----.</p>
<p>제22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u>대책본부</u>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p> <p>② <u>통합지휘소</u>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2조(복구체계의로의 전환) ① <u>대책본부장</u> ----- ----- ----- ----- -----.</p> <p>② <u>통합지원본부</u> ----- ----- ----- ----- -----.</p>
<p>제 23조(<u>통합지휘소</u> 철수) <u>통합지휘소</u>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u>통합지휘소</u>를 철수시킬 수 있다.</p>	<p>제 23조(<u>통합지원본부</u> 철수) <u>통합지원본부</u> ----- ----- <u>통합지원본부</u> ----- -----.</p>
<p>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u>대책본부</u>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u>통합지휘소</u>의 장에게 위임한다.</p> <p>1. ~ 10. <생략></p>	<p>제24조(권한의 위임) ----- <u>대책본부장</u> ----- <u>통합지원본부</u> -----.</p> <p>1. ~ 10. <현행과 같음></p>

남해군 조례 제2290호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

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남해경찰서장
2. 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3. 육군 제8962부대2대대장
4. 남해소방서장
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
6.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및 의사)” 를 “(회의)” 로 하고, 제3항 중 “출석과” 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실무위원회)” 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로 하고, 제1항 중 “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단체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하며” 로 하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 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하는” 을 “소속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석과” 를 “출석으로 개의하고” 로 한다.

제8조 중 “안전관리” 를 “재난 및 안전관리”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업무” 를 “재난 및 안전관리”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계자” 를 “관계전문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 를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관계기관·단체장” 을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단체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실무위원회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u> 2. <u><삭제 2010.2.26></u> 3. <u><삭제 2010.2.26></u> 4. <u>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안전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안전업무의 협의·조정</u> 5. <u>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u> 6. <u>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심의</u> 	<p>제2조(위원회의 기능) <u>남해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u> 2.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u> 3. <u>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u> 4. <u>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5. <u>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u> 6. <u>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군수가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육군제8962부대2대대장, 관할 소방서장이 된다.</u></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남해경찰서장</u>

<p>1. <u>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u></p> <p>2. <u>재난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u></p> <p>④ ~ ⑤ <생 략></p>	<p>2. <u>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u></p> <p>3. <u>육군 제8962부대2대대장</u></p> <p>4. <u>남해소방서장</u></p> <p>5. <u>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u></p> <p>6. <u>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p> <p>② <u>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6조(위원회 및 의사) ① ~ ② <생 략></p> <p>③ <u>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④ <생 략></p>	<p>제6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무위원회) ① <u>위원회에 올리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단체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해군 <u>안전관리실무위원회</u>(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u></p>	<p>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u>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하며 -----</u> ----- ----- ----- <u>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u>(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 ----- <u>소속된</u> ----- -----.</p>

남 해 군 공 보

(18) 제 582 호

2018년 8월 17일

<p>③ <생 략></p> <p>④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생 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출석으로 개의하고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활용) <u>안전관리</u>의 정책개발 · 주요시책의 입안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 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의 활용) <u>재난 및 안전관리</u> ----- ----- -----.</p>
<p>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u>안전업무</u>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 ----- <u>재난 및 안전관리</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관계자</u>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u>해당 지역의 안전관리</u>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 ----- <u>관계전문가</u> ----- ----- -----.</p> <p>② ----- <u>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u> ----- ----- -----.</p>
<p>제12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 경우도 또한 같다.</p>

<p>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u>위원회 및 실무위원회</u>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u>관계기관·단체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신설></p>	<p>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u>위원장</u> ----- ----- ----- <u>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단체장</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실무위원회 회의결과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u></p>
--	--

남해군 조례 제2291호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단장, 부단장은 자율방재협의회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를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무국장은 자율방재협의회원”을 “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단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읍·면 자율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이하 “대표”라 한다)를 두되, 단장은 해당 읍·면 단원이 호선하고, 부단장 및 총무는 읍·면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6조제1호 중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를 “단원의 소재가”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 중 “10월” 을 “9월”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교육)” 을 “(교육 및 훈련 등)” 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재단원 교육은 군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연재해대책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자연재해대책법</u>」 ----- ----- ----- ----- -----</p>
<p>제4조(조직) ① <생 략></p> <p>② <u>단장, 부단장은 자율방재협의회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u></p> <p>③ <u>사무국장은 자율방재협의회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u></p> <p>④ ~ ⑦ <생 략></p> <p>⑧ <u>읍·면 자율방재단 단장, 부단장, 총무(이하 “<u>대표</u>”라 한다)는 해당 읍·면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u></p>	<p>제4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u> ----- -----.</p> <p>③ <u>부단장 및 사무국장은 단원</u> ---- -----.</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읍·면 자율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이하 “<u>대표</u>”라 한다)를 두되, 단장은 해당 읍·면 단원이 호선하고, 부단장 및 총무는 읍·면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u></p>
<p>제6조(해임) <생 략></p> <p>1. <u>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u></p> <p>2. ~ 5. <생 략></p>	<p>제6조(해임) <현행과 같음></p> <p>1. <u>단원의 소재가</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8조(임무) ① <생 략></p> <p>② <생 략></p>	<p>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남 해 군 공 보

2018년 8월 17일

제 614 호 (23)

<p>1. ~ 7. <생 략></p> <p>8. <u>전염병</u>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p> <p>9. ~ 10. <생 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감염병</u> -----</p> <p>9. ~ 10. <현행과 같음></p>
<p>제9조(소집) ① <u>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 ~ ③ <생 략></p>	<p>제9조(소집) ① <u>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운영 등) ① ~ ⑥ <생 략></p> <p>⑦ 단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⑧ ~ ⑨ <생 략></p>	<p>제10조(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9월 ----- ----- -----.</p> <p>⑧ ~ ⑨ <현행과 같음></p>
<p>제13조(교육) ① <u>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임원 및 단원은 매년 두 차례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③ <u>단장은 교육시간 중 매년 한 차례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④ <u>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u></p>	<p>제13조(교육 및 훈련 등) ① <u>군수는 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방재단원 교육은 군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u></p> <p>③ <삭 제></p> <p>④ <삭 제></p>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한 차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 ① <삭 제>

② <삭 제>

남해군 조례 제2292호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해군향토장학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남해군향토장학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남해군이 남해군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설립) 남해군향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출연금
- 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
-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출연금의 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 3. 우수교사 지원사업
- 4.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 5.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6. 교육여건 개선사업
- 7.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9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장학회 업무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93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남해군 본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 행정제도 등으로 군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지방세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지방세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 사유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련 민원 발생원인 분석 및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제 발굴
3. 납세자권리현장의 개정 의견 등 납세자권리현장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 감사 및 경상남도 감사 또는 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수사기관에 탈세 제보나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른 불복 신청기한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에서 제외됨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 ① 고충민원이 있는 납세자는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의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두번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세 번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다만,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반복 제기된 경우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어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남해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안전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1. 처분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및 처리기한) ①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180일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등)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납세자보호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지방세 공무원은 납세자권리현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현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개

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제도개선 의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 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관리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한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294호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세 조례” 를 “남해군 군세 조례” 로 한다.

제16조 중 “10만원” 을 “20만원”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세 조례</u></p> <p>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u>10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남해군 군세 조례</u></p> <p>제16조(납기) ----- ----- <u>20만원</u> ----- ----- -----.</p>

남해군 조례 제2295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중 “2017년 12월 31일” 을 “2020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 를 “자동이체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u>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p>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 ----- -----<u>2020년 12월 31일</u> -----, ----- ----- <u>2020년 12월 31일</u> ----- -----.</p> <p>② < 삭 제 ></p>
<p>제6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u>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u>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3.(생략)</p>	<p>제6조(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u>2020년 12월 31일</u>-----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p>	<p>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p>

<p>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u>2020년 12월 31일</u> ----- ----- ----- ----- -----.</p>
<p>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17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p>	<p>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 <u>2020년 12월 31일</u> ----- -----.</p>
<p>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u>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u>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u>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u>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 (생략) 1. ~ 2. (생략)</p>	<p>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u>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u>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 방식에 따른</u>----- 2. <u>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u>----- -----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p>

남해군 조례 제2296호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생 략)</p> <p>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생 략)</p>	<p>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지급)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p>	<p>제8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 ----- ----- -----</p>
<p>제9조(환수) ① · ② (생 략)</p> <p>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제43조----- -----</p>

남해군 조례 제2297호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그 구성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인 읍면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진실·질서·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민정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 4. 그 밖에 군수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 1. 유공자 표창
- 2. 불우한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 3.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298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 학교 학년의 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

1. 고등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
2. 대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학생
3.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 규정에”를 “제2조에”로 하며, “학년마다”를 “학년 초에”

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하고, “경우에는” 을 “때에는” 으로 하며,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를 “장학생 선발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읍·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장학금 중 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 를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없으면” 을 “없는 한”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이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u></p>	<p>제1조(목적) -----<u>남해군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u>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u></p> <p>1. <u>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u></p> <p>2. <u>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u>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 학년의 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여야 한다.</u></p> <p>1. <u>고등학생 : 신청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해당 학년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인 학생</u></p> <p>2. <u>대학생: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학점이 3.0 이상인 학생</u></p> <p>3. <u>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u></p> <p>② <u>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u></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u>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u></p>	<p>제3조(추천) -----<u>제2조에-----</u></p> <p>-----<u>학년초에-</u></p> <p>-----</p>
<p>제4조(선발) 군수가 <u>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u></p>	<p>제4조(선발) ① -----<u>읍·면장-----</u></p> <p>-----<u>때에는</u></p> <p><u>장학생 선발기준-----</u></p> <p>-----</p>

<p>에 확정하여야 한다. <신 설></p>	<p>-----.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군수가 정 하되,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읍 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 학금은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 비)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p>	<p>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년 고등학생 장학금 중 최고금액의 120 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에서 수업료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 다.</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 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 후 1개월 이 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 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p>	<p>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학기별 로 매 학기 개시 ----- ----- ----- -----. ② ----- -----없는한 ----- -----.</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을 받았을 경우 2.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공적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 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경우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p>	<p>제8조(지급의 정지)----- ----- ----- -----. 1. 장학생이 자퇴 또는 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장학생이 ----- 다른 지원금----- ----- 3.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상실한 경 우</p>

남해군 조례 제2299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남해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남해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22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실(공연, 전시, 행사 등 용도)
2. 전시실
3. 동호회실
4. 휴게공간
5. 악기연습실(밴드, 사물놀이 등)
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4. 영화·음악·무용·미술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21:00
 2. 토·일요일 09:00 ~ 18:00
-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2. 1월 1일
 3. 설, 추석 연휴기간
 4.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5. 그 밖에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할 때

제6조(시설의 사용 신청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③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 하며,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6.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문화활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할 때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제8조 관련)

1. 사용료(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실	오전	20,000	1. 사용기준시간 ○ 오전 : 10:00 ~ 13:00(3시간) ○ 오후 : 14:00 ~ 17:00(3시간) ○ 야간 : 18:00 ~ 21:00(3시간) 2. 가산요율 ○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50% 가산 ○ 냉·난방사용 시 50% 가산 3. 사용료는 부가가치세(10%) 미포함 금액임
	오후	20,000	
	야간	30,000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오전	3,000	
	오후	3,000	
	야간	5,000	

2. 사용료 반환(다목적실, 동호회실, 전시실, 악기연습실)

반 환 기 준		
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	1.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단 체 명		전화번호	집	
				휴대폰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신청사항	시 설 명				
	사용목적 (용 도)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사 용 료					
기 타 서 류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2300호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호제1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중 “남해군 귀농어업·귀촌 지원센터”를 “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본문 생략)</p> <p>1.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p> <p>2.~3.(생 략)</p>	<p>제2조(정의)(현행과 같음)</p> <p>1.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제3조제1호 및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제3조제1호-----.</p> <p>2.~3.(현행과 같음)</p>
<p>제7조(심의회 심의)-----</p> <p>----- 「<u>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 조례</u>」 제2조에 따른 <u>남해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p>	<p>제7조(심의회 심의)-----</p> <p>-----<u>남해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u>와 <u>남해군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u>-----.</p>
<p>제8조(귀농어업인·귀촌지원센터 설치·운영)----</p> <p>-----<u>남해군 귀농어업·귀촌 지원센터</u>-----.</p>	<p>제8조(귀농어업인·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p> <p>-----<u>남해군 귀농·귀촌지원센터</u>와 <u>남해군 귀어·귀촌지원센터</u>-----.</p>

남해군 조례 제2301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계획 조례” 를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로 한다.

제5조 제1호의 내용 중 “관계전문가” 를 “주민과 관계전문가” 로 한다.

제8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산림청장이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임업통계연보를 말한다.)상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80 퍼센트 이하이며,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다만, 숲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숲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제16조제1항제2의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고는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남해군 관리지역상 자연취락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와 동

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는 적용 제외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 1. 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자연취락지구(남해군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4.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로 한다.

③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수목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을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6호 중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 를 “자연경관지구” 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의 제목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 을

“영 제76조제2호” 로, “공용시설보호지구” 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 으
로 한다. 같은 조 제16호 중 “장례식장” 을 “장례시설” 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
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
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
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
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2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참고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사목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 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건축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p>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u>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u>산지관리법</u>」에 따른다.</p> <p>2의2. <u>입목본수도의 산출방법은[별표24]에 따른다.</u></p> <p>3. <u>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다만, 50미터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u></p> <p>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 등급(비오텍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II 등급(비오텍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p>	<p><u>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u></p> <p>2.(현행과 같음)</p> <p>2의2. <삭 제></p> <p>3. <u>표고는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가 접하는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 도로에서 분기하는 경계표면의 높이로부터 지반의 평균높이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다만, 남해군 관리지역상 자연취락지구를 기준으로 반경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축사는 적용 제외한다.</u></p> <p>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16조의 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시행령 <u>별표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구역(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2. <u>해안선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3. <u>자연취락지구(남해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4. <u>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u>

	<p><u>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p> <p>②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가 20도 이하로 한다.</p> <p>③ 군수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2미터 이상의 수목의 차폐림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p> <p>⑤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제2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 (생략)</p> <p>1. ~ 15. (생략)</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p> <p>③ (생략)</p>	<p>제27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p> <p>① (현행과 같음)</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장례시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 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p> <p>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p>	<p>제2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 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p>

<p><u>하</u></p> <p>2. <삭 제></p> <p>3. <u>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u> <u>하</u></p> <p>4. <삭 제></p> <p>5. <u>전통경관지구 및 조망권경관지구 : 3</u> <u>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u></p>	
<p>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u>자연경관지구 ·</u> <u>수변경관지구</u>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 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 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 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0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u>자연경관지구 -</u> ----- ----- ----- ----- ----- ----- ----- ----- -----.</p>
<p>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u>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u> <u>는 골프연습장</u></p> <p>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 <u>료시설 중 건물 외부에 창살이나 담</u> <u>장 등이 있는 정신병원 및 격리 병원</u></p> <p>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u>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u> <u>습장</u></p> <p>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u>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u></p> <p>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u>공장</u></p> <p>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p>	<p><삭 제></p>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
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
· 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
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
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 선으로부터 3미터 이
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관계확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p><u>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u></p>	
<p><u>제3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설치</u> <u>2. 조경식수</u> <u>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u></p>	<p><삭 제></p>
<p><u>제33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중심미관지구 : 5층이상</u> <u>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하는 경우는 5층 이하)</u></p>	<p><삭 제></p>
<p><u>제3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하여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u></p>	<p><삭 제></p>

<p><u>·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u></p>	
<p><u>제35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u> <u>② 미관지구 안에서는 골뚝·환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u></p>	<p><삭 제></p>
<p><u>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u> <u>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u> <u>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u> <u>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u> <u>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u> <u>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u> <u>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u> <u>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u> <u>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u> 	<p><삭 제></p>

<p><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u></p> <p>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u>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u></p> <p>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u>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u></p> <p>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u>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u></p> <p>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u>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u> 가. <u>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u> 나. <u>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u></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제37조(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u>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p>1. ~ 15. (생략)</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u>장례식장</u></p>	<p>제3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u>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안에서는 -----</u> -----.</p> <p>1. ~ 15. (현행과 같음)</p> <p>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u>장례시설</u></p>
<p>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u>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p>제39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u>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u></p>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은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p><u>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u></p> <p>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p> <p>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u>장례시설</u></p>
--	--

남해군 조례 제2302호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게스트하우스 이용료

1. 이용료

구 분	대학생 이하	일 반		비 고
		비수기	성수기	
게스트룸 2인실 및 4인실	15,000	20,000	25,000	(단위: 원)
게스트룸 12인실 및 14인실				

- 성수기 : 7월~8월,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
- 1인 1박 기준
- 가족동반 만5세 이하는 이용료 면제
- 1박은 당일 14:00~익일 12:00까지

남해군 조례 제2303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경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제2조(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3. 장비·인력 등의 동원요청·대피명령·통행제한 요청 등의 응급조치
4.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5.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지원 요청
7.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8. 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9.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도 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10. 그 밖에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외에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차장,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부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대변인: 홍보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3. 통제관: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상황관리, 행정 지원업무 등의 총괄 및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여 재난 수습업무 및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 및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는 별표2에 따른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과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책본부의 편성기준
 - 가. 자연재난의 경우: 별표 3
 - 나.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4
- 2. 실무반의 업무 및 역할: 별표 5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다.

-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범위
-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실·과·단·소장

2.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해당 재난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남해군대책본부회의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남해군 대책본부회의 (이하 “대책본부회의” 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된다.

1. 대책본부 통제관
2. 대책본부 담당관
3.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4. 군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행정기관 및 군부대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범위에서 회의 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 상황
5. 그 밖에 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의 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수습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중앙대책본부 및 도 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제17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으면 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4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행정과 행정과 행정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행정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기획감사실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6. 행정안전부	가. 군 청사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화재·위험물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무과 해당실과단소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다. 축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해당실과단소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교통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발전소의 사고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경제과

남 해 군 공 보

(88) 제 582 호

2018년 8월 17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리.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해당실과 (도시건축과 등)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마.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경제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17.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남해군 조례 제2304호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2. 저소득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 3.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1.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 2. 원예예술촌 입장료
- 3. 보물섬 캠핑장 사용료
- 4. 거북선 관람료
- 5. 나비생태관 관람료
-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 7.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 8.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 9. 체육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예우대상자 가족인 경우에는 병역명문가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②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③ 남해군 보물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④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⑤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⑥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중 제7호 및 제8호를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⑦ 남해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남해군 조례 제2305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3.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제2조제8호와 제10호, 제11호에 따른 자로”를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제2조 제8호, 제10호, 제11호에 따른 자와 제9호에 따른 마을회로”한다.

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체별 지원 내용(제12조 관련)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농협중앙회남해군지부 군내 지역 농·축·협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농축산과
(사)전국한우협회 남해 군지부, 남해낙우회	축산,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축산낙농 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 행사 참가	축산정책팀
양봉협회 남해군지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 양봉기술 벤치마킹, 판매홍보, 각종행사 참가	축산정책팀
남해군 특산물 생산유 통합의회	직거래장터운영지원, 국내외 선진 유통홍보 판매 기술 벤치마킹	유통지원팀
(사)농촌지도자남해군 연합회	연합회·읍·면회의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인력육성팀
(사)농업경영인남해군 연합회	연합회·읍·면회의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인력육성팀
(사)여성농업인남해군 연합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인력육성팀
남해군 4-H연합회	영농 및 학교4-H회 시범사업 및 과제 활동, 중앙(도)연찬 참가	인력육성팀
남해군강소농회	강소농 운영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시범사업	인력육성팀
보물섬 국화연구회	국화 전시회, 작품 생산 및 선진지 견학, 재배기술 교육	농촌체험팀
체험마을연합회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체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동	농촌체험팀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농촌체험·휴양마을회	농촌체험 기반 조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체험마을 운영 교육	농촌체험팀
남해군정보화농업인회	농업 e-비즈니스 정보화	농촌체험팀
(사)한국생활개선 남해군연합회	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및 분야별 전문연구회	생활문화팀
(사)한국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	회 운영 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참가 고품질 벼 재배 기술 선도 실천 및 해외 벼 재배동향, 가공품 개발 벤치마킹	식량작물팀
남해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운영지원(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중앙(도) 행사	환경농업팀
보물섬 남해시금치 연합회	시금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팀
남해 섬애약쑥 작목회	섬애약쑥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팀
남해군 참다래연합회	참다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팀
남해파프리카 수출농단	남해파프리카 수출 관련 지원 및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팀
보물섬미니단호박 작목회	미니단호박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팀
(사)한국참다래연합회남해지회	참다래 재배기술 등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팀
보물섬남해마늘작목회	회 운영(회의, 교육, 견학, 연찬 등) 및 선진마늘재배 기술 벤치마킹 국·내외 연수, 시범사업 마늘축제 참여 및 홍보	마늘팀
수산업경영인 남해군연합회	해외연수 및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 치어방류 및 해안정화활동 등	수산기획팀

단 체 명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남해군낙시연합회	전국 낙시대회	수산기획팀
남해군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수산기획팀
남해군어촌계장연합회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연안관리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위한 회의, 교육, 견학, 연찬, 행사 등	어업지도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뜻)(본문 생략) 1.~5.(생 략) 6.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 ----- 7.~11.(생 략)</p>	<p>제2조(용어의 뜻)(현행과 같음) 1.~5.(현행과 같음) 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 조제6호----- ----- 7.~11.(현행과 같음)</p>
<p>제7조(지원 범위)①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생 략) 3.<신 설> 3.(생 략) ② -----제2조제8호와 제10호, 제11호에 따른 자로 -----.</p>	<p>제7조(지원 범위)① -----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 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2.(행과 같음) 3. 농어촌마을의 농어업용 공동이용시 설을 지원하는 경우 4.(현행 제3호와 같음) ②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 는 제2조 제8호, 제10호, 제11호에 따 른 자와 제9호에 따른 마을회로 ---.</p>
<p>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본문 생략) 1.~7.(생 략) 8.<신 설> 8.(생 략)</p>	<p>제8조(농어업인 소득보전 등)(현행과 같 음) 1.~7.<현행과 같음> 8. 농어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9.(현행 제8호와 같음)</p>

남해군 조례 제2306호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로 한다.

제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의)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 -)-----.	제2조(적용범의)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 및 「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u> 」 제3조-----)-----.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u>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 및 「 <u>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u>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u>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u> 」 및 「 <u>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남해군 조례 제2307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해정”을 “금해정, 무도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3.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초·중·고 축구팀이 인조잔디구장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9.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10. 군민이 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1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제목 “위탁관리” 를 “관리위탁”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평일	토.공휴일
공설운동장	남해읍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트랙	"	무료	무료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220,000	275,000
	인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77,000	110,000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3시간	110,000	165,000
		체육이외	1회/3시간	220,000	330,000
		냉·난방시설	"	110,000	110,000
		복싱장	-	무료	무료
		스포츠댄스장	-	무료	무료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야간조명	"	110,000	110,000
	보조구장 (천연잔디)	필드	"	220,000	275,000
	인조잔디 구장	필드	"	77,000	110,000
		야간조명	"	33,000	33,000
	야구장	인조구장	"	132,000	165,000
		야간조명	"	110,000	110,000
	풋살 경기장	필드	"	22,000	33,000
	테니스장	코트	1회 3시간/1면	11,000	16,500
족구장	군일원	구장	1회/3시간	10,000	15,000
		조명시설	1회/3시간	5,000	5,000
공설 테니스장	남해읍	코트	1회 3시간/면	11,000	16,500
생활체육관 (탁구장)	개인	개인	1회/3시간	2,000	3,000
	월회원	개인	1회/3시간	30,000	30,000
		단체	1회/3시간	20,000	20,000
생활체육관 (사격장)			1회/1시간	10,000	15,000
게이트볼장	읍면	-	-	무료	무료
금해정	궁도장	사대	1일 1회	20,000	25,000
무도관	검도관		1회/3시간	30,000	40,000
	유도관		1회/3시간	30,000	40,000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전용 기본료의 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

2. 야외공연장 사용료

시설물별	기 준	요금(평일)	비 고
스포츠파크 야외공연장	1일 1회 (4시간 기준)	100,000원	토·공휴일 사용료는 평일 사용료의 50% 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체육시설”이란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 면 공설운동장(체육공원), 실내체육관(족구장 포함), 스포츠파크 내의 시설(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야구장, 풋살구장, 테니스장, 야외공연장 등을 말한다), 공설 테니스장,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u>금해정</u>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 -----, <u>금해정</u>, <u>무도관</u> 등을 말한다.</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u></p> <p>2. <u>체육진흥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u></p> <p>3. <u>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u></p> <p>4. <u>5일 이상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축구 인조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u></p> <p>5. <u>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초·중·고 축구 팀이 축구장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u></p> <p>6. <u>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u></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u>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u></p>	<p>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u>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u></p> <p>1. <u>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u></p> <p>2. <u>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u></p>

2.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천연·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 1회 3시간이내)로 제한한다.

3.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인조잔디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초·중·고 축구팀이 인조잔디구장을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삭제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국가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8.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9.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10. 군민이 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 야

<p>④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디구장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주3회(1일 1회 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p>⑤ <u>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파크 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p> <p>⑥ <u>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u></p>	<p><u>구장을 사용하는 경우</u></p> <p>11. <u>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가족</u></p> <p>④ <u>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20조 (<u>위탁관리</u>)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20조 (<u>관리위탁</u>)----- ----- ----- -----</p>

남해군 조례 제2308호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그 외 국경일”을 “그 밖의 국경일”로 하고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근로자의 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1. 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8.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 9.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 10.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1. 「남해군 인구중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 1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④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인이 3개월 이상의 월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南海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②<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u>그 외</u>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5. <신 설></p>	<p>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5. <u>근로자의 날</u></p>
<p>제11조(이용료의 감면 등)①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u> 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u> 2. <u>체육진흥 또는 후학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u> 3. <u>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사용할 때</u> 4. <u>남해군체육회 또는 남해군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u> 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1. <u>「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 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u> 3. <u>「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u> 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u> 5.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u></p>	<p>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u>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 ②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u> 1. <u>남해군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u> 2. <u>「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u> ③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u> 1. <u>「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u> 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u> 3. <u>「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 18 민주국가유공자</u> 4.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u> 5. <u>「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u></p>

다문화가족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 9. 남해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자녀
- 1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 11.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2인 이상이 남해군으로 전입한 세대(세대당 1명에 한하여 2년 동안 감면한다)
- ③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남해군에서 5일 이상 체류하는 단체 또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에게는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은 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⑤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 남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화가족

-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8.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부모 또는 그 자녀
- 9.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회원 중 임신한 사람
- 10.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군에서 체류하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 1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및 가족
- ④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은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⑤ 일반인, 청소년 또는 군인이 수영장과 헬스장 2종목을 동시에 이용하는 회원과 일반인이 3개월 이상의 월 이용료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만1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와 남해사랑카드 소지자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며,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이나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남해군 조례 제2309호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해군에 주소를 가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에서 남해군수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남해군의 각종 정책과 청년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
3.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직업능력 개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2. 구인·구직 등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
5. 청년 창업지원 사업
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청년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310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호 중 “의회”를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는 삭제한다.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통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검칙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술선수 범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공

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5호의2 서식, 제8호의2 서식, 제8호의3 서식, 제8호의4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u>선물</u>“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p> <p>3. “<u>향응</u>“이란 <u>음식물 ·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금품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u>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u> 나. <u>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u> 다. <u>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u></p> <p>3. <삭 제></p>
<p>제4조(윤리강령) (생 략)</p> <p>1. ~ 3. (생 략)</p> <p>4. <u>의회의</u>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p> <p>5. (생 략)</p>	<p>제4조(윤리강령)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남해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u> ----- -----.</p> <p>5.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4조의2(<u>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등</u>)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u>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u></p>
<p>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p>	<p>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p>

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 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제 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p>6. <u>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u></p> <p>7. <u>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u></p> <p>④ <u>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⑤ <u>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⑥ <u>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u></p>
<p><u>제16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u></p>	<p><삭 제></p>
<p><u>제18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기재한 신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통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u></p>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

	<p><u>니한다.</u></p>
<p><신 설></p>	<p>제18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 <p>①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1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 소속 의원 또는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p>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술선수법하여야 한다.</p> <p>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p>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p> <p>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p> <p>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p>	<p>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p> <p>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p>
<p>제24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p> <p>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해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 제공받은 자, 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2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p> <p>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p> <p>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p> <p>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p>

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8호의3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8호의4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

	<p><u>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신 설></p>	<p><u>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u></p> <p><u>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u></p>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고시 제2조에 따라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다.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2호서식] (제9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의
------	---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소명내용	
------	--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의2 서식] (제15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	--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	--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	--

비고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	--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제19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	--	--	--	--	--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제20조제2항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제23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별지 제8호의2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	--	--	--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	--	--	--

비고			
----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의4서식] (제24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9호서식] (제18조제7항, 제24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 조례 제2311호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군수”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3분의1”을 “3분의 1”로, “행정사무중”을 “행정사무 중”으로,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을 “조사의 발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조사발의”를 “조사 발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위원(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을 확정한다”를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조사발의”를 “조사 발의”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언어” 를 “받아” 로 한다.

제3조제6항 및 제7항 중 “본의회” 를 각각 “본회의” 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남해군
2. 「지방자치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사무
2. 군이나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의 사무로서 국회나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그 사무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 중 “검토후” 를 “검토 후” 로 한다.

제8조 중 “계속증인” 을 “계속 증인” 으로, “수사증인” 을 “수사 증인” 으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제8조의2 중 “범위내에서” 를 “범위 내에서” 로, “군산하” 를 “군 산하” 로 하고, “제8조의2(증인의 실비보상)” 를 “제9조의2(증인의 실비보상)” 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 등

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관계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이에 응할 수 없는” 을 “이에 따를 수 없는” 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부과한다” 를 “부과할 수 있다” 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6항 중 “의거” 를 “따르되” 로 한다.

제10조 중 “대상현장이나” 를 “대상 현장이나” 로 한다.

제11조 중 “감사, 조사위원회” 를 “감사·조사위원회”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제12조제2항 중 “당해 의원” 을 “해당 의원” 으로,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을 “다른 의원에게” 로, 제12조제3항 중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을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으면” 으로, 제12조제4항 중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을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으로, “대상기관” 을 “대상 기관” 으로, 제13조제2항 중 “사유없이” 를 “사유 없이” 로, “아니된다” 를 “아니 된다”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조사결과” 를 “조사 결과” 로, 제14조제1항 중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제14조제3항 중 “위원장으로 하여금” 을 “위원장에게”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조사보고” 를 각각 “조사 보고” 로, 제15조제2항 중 “조사결과” 를 “조사 결과” 로, “해당기관” 을 “해당 기관” 으로, “요구하고” 를 “요구하고,” 로 “처리함” 을 “처리하는 것이” 로, 제15조제3항 중 “해당기관” 을 “해당 기관” 으로, “지체없이” 를 “지체 없이” 로 한다.

제17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으로, “준용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남해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 -----.</p>
<p>제2조(감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③~④ (생략)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받아-----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지체 없이 남해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p>
<p>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을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p>	<p>제3조(조사) ① -----3분의 1----- -----행정사무 중-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 ② 조사의 발의는----- ----- ----- -----. ③ -----조사 발의----- 지체 없이-----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휴회 중-----</p>

<p>제2항의 <u>조사발의</u>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p> <p>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u>본회의</u>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u>조사 발의</u>----- -----.</p> <p>⑤ ----- ----- -----</p> <p>-----<u>받아</u>-----.</p> <p>⑥ <u>본회의</u>----- ----- -----.</p> <p>⑦ -----<u>본회의</u>----- ----- -----.</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u>당해 지방자치단체</u></p> <p>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p> <p>3. <삭제></p> <p>4. 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5. <삭제></p> <p>② (생략)</p>	<p>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u>각 호</u>----- --.</p> <p>1. <u>남해군</u></p> <p>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p> <p>3.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p> <p>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남 해 군 공 보

(148) 제 582 호

2018년 8월 17일

<p>① <u>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의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한 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u></p> <p>② <u>제1항의 사무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그 사무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u></p>	<p>① <u>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u>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사무</u></p> <p style="margin-left: 20px;">2. <u>군이나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의 사무로서 국회나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u></p> <p>② <u>조사는 군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실시한다</u></p> <p>③ <u>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그 사무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u></p> <p>④ <u>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u></p>
<p>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u>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u></p>	<p>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 ----- <u>검토 후</u>----- -----.</p>
<p>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u>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u></p>	<p>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 -----<u>계속 중인</u> -----<u>수사 중인</u>----- -----<u>아니 된다.</u></p>
<p>제8조의2(증인의 실비보상) <u>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u></p>	<p><삭 제>(제9조의2 이동)</p>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균산하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 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하 “증인”이라 한다)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관계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이에 따를 수 없는-----

-----.

④ -----

<p>때에는 그 의결로 <u>당해</u>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u>다른 의원</u>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u>당해 의원</u>의 <u>의의가 있는 때에는</u>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p> <p>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u>한하여</u>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p>-----<u>해당 의원</u>----- -----<u>다른 의원에게</u>----- ----- ③ -----<u>해당 의원</u> <u>의의가 있으면</u>----- ----- ④ ----- --<u>한정하여</u>----- ----- -----</p>
<p>제13조(주의의무) ① <u>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u> 그 <u>대상기관</u>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p> <p>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u>사유 없이</u> 누설하여서는 <u>아니된다</u>.</p>	<p>제13조(주의의무) ① <u>의원</u>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u>대상 기관</u>----- ----- ----- ② ----- -----<u>사유 없이</u>----- -----<u>아니 된다</u>.</p>
<p>제14조(감사 또는 <u>조사결과</u>의 보고) ①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u>지체없이</u>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의장은 <u>위원장으로 하여금</u>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감사 또는 <u>조사 결과</u>의 보고) ①----- ----- ----- -----<u>지체 없이</u>-----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에게</u>----- ----- --.</p>
<p>제15조(감사 또는 <u>조사보고</u>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u>조사 보고</u>를 처리한다.</p> <p>② 감사 또는 <u>조사결과</u> 군 또는 <u>해당기관</u>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u>요구하고</u>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u>처리함</u>이 타당</p>	<p>제15조(감사 또는 <u>조사 보고</u>에 대한 처리) ① -----<u>조사 보고</u>----- ----- ② -----<u>조사 결과</u>----<u>해당 기관</u>----- ----- -----<u>요구하고</u>-- -----<u>처리하는 것이</u>-----</p>

<p>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p> <p>③ 군 또는 <u>해당기관</u>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u>지체 없이</u>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 ③---<u>해당 기관</u>----- -----<u>지체 없이</u>----- -----</p>
<p>제17조(준용규정) 본회의 또는 감사·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u>이 조례</u>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을 <u>준용한다</u>.</p>	<p>제17조(준용규정) ----- -----<u>이 조례</u>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 -----<u>따른다</u>.</p>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36호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 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간연장 사유, 처리예정 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세무부서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이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일
-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따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연장결정에 따른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기신청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조사연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연기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자료제출 등의 요청)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조사의 착수 보류 또는 해당 조사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세수일실·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남,여)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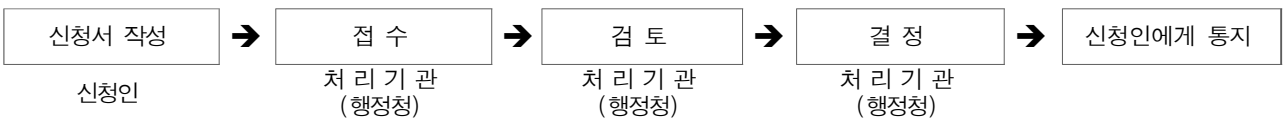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귀하(귀 법인)가 ○○. ○○. ○○. 제출한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당초처리기간		. . .	처리에정기한	. . .
기한연장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 ○○. ○○.까지 당 초처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충의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하고 그 결과를 ○○. ○○.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고 충 내 용			

붙임 고충민원서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m²)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남 해 군

수신 납세자보호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신청일자	. . .	처리일자	. . .
고충내용 (요 약)				
00과 의 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직권시정 하였을 경우)			

붙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아래 민원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귀 부서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열람·제출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 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신청일자	. . .
고 충 내 용				
요 구 자 료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귀하(귀 법인)가 ○○.○○.○○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민원내용				
처리내용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검토(의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내용				
시정요구 내용				

(붙임: 고충민원의결서)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고충민원 내용				
의결 내용				

붙임 의결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고충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1) 세무부서의 장]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납세자	성명(법인명)/(남,여)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조사대상 세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2) 납세자]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남,여)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연장신청 사유	※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 연장신청 사유를 기재
---------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세무조사기간 연장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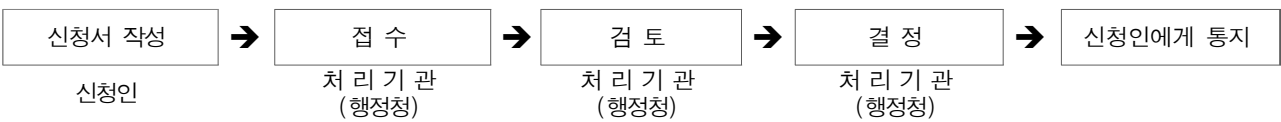
위임 받은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 계
	주소	전화 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접수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기간 연장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붙임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의견 송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장 신청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검토 의견	연장 여부	
	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결정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처리결과 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래 납세자가 신청한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에 대해 그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신청내용	당초 조사기간		~	
	연장신청 조사기간		~	
	연장신청 사유			
처리사항	연장 여부			
	사유			
	연장된 조사기간		~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접수 통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접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접 수 사 항	당초 조사기간		
	연기 신청기간		
	연기 신청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연기신청 기간			
○○과 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보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결정 사항	연기여부		
	연기된 조사기간		
	결정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 통보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 내용	당초조사기간			
	연기신청기간			
	연기신청사유			
처리결과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성명(법인명)/(남,여)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	--------	--------	--------	--------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 보호요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리보호요청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서류	1. 예고 통지서 등 주무서서로부터 통지 받은 서류 2. 권리보호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연장통지

귀하가 ○○. ○○.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에 대하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기 간 연 장	기간연장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 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귀하가 ○○. ○○. ○○. 제출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에 대하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내용				
처리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		
시정요구 내용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 리 결 과	수용여부	여 / 부
	처리사유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처리결과				
처리사유				

끝.

남 해 군 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과장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서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어 귀 부서의 의견 및 자료를 요청하니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 내용			
필요한 자료 명세			

붙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1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남 해 군

수신

(경유)

제목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남해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합니다.

납 세 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 국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권리보호요청내용				
○○과 검토의견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 접수
호(시행일)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남해군 규칙 제1137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8년 8월 17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을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를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u></p>	<p><u>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목적) ---- 「<u>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 -----.</p>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907호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8일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가. 공 사 명 :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일원

다. 공사내용

● 급경사지 정비 1식(L=380.0m)

1) 토 공

- 흙깎기(토사) : 3,141m³ ○ 흙깎기(풍화암) : 1,130m³ ○ 흙깎기(연암) : 1,934m³
- 터파기(토사) : 1,145m³ ○ 터파기(풍화암) : 290m³ ○ 터파기(연암) : 166m³
- 되메우기(다짐) : 669m³ ○ 별개체근 : 6,697m³ ○ 기존구조물깨기 1식

2) 비탈면안전공

- 개비온옹벽(H=2.0m~3.0m) : 163.6m ○ 쏘일네일링(L=5.0m, L=8.0m:92공) : 140공
- 비탈면 녹화(녹생토 T=7cm,유망) : 5,211m³ ○ 비탈면 녹화(녹생토T=10cm,유망) : 694m³

- 토석류방호책(링네트토석류방호책 H=2m~3m) : 3개소
 - 3) 배 수 공
 - L형측구(각종) : 1,057m ○ 중배수관(과형강관 D450mm) : 434m
 - 소루암거(2.0x1.5) : 160m ○ 벤치플름관(300C) : 168m ○ 우수받이 : 36개소
 - 집수정 : 16개소 ○ 산마루측구 : 249m
 - 4) 구조물공
 - 역T형옹벽(H=1.5~3.5m) : 55m ○ 전석쌓기(H=2.0m) : 11.5m
 - 5) 포 장 공
 - 아스콘포장 : 3,205m³ ○ 콘크리트포장(T=20cm) : 494m³ ○ 탄성포장(T=15mm) : 344m³
 - 6) 부 대 공
 - 가설사무소 1식 ○ 중기운반 1식 ○ 자재운반 1식 ○ 기타 부대(안전)시설 1식
- 라.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외 14필지 / 8,286m²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8. 8. 8. ~ 2018. 8. 22.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8년 9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감정평가⇒보상금 산정⇒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협의(계약체결)
⇒보상금 지급⇒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공탁(협의 불성립시)⇒이의재결 또는 소송

-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를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055-860-329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예정 토지조서 1부.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보상계획에 대한 의견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p>○ 대상 토지 또는 물건:</p>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남해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아산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대상토지 및 소유자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성 명	주 소			

추천 감정평가업자

법인명	수행지사	연락처	비 고

2018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 소유자 확인란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남 해 군 공 보

2018년 8월 17일

제 614 호 (195)

용 지 편 입 조 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m ²)		소 유 자		관계인(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군	읍	리	분할전	분할후	대장	현재	총지적	편 입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남해	남해	아산	산144-4	산144-19	유	유	992	3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2	남해	남해	아산	산144-5	산144-20	임	임	29,421	136	경남 진주시 축석로	진윤0			
3	남해	남해	아산	산144-6	산144-6	도	도	397	397	남해군 남해읍	김상0			
										남해군 남해읍	황종0			
4	남해	남해	아산	산144-7	산144-22	임	임	21,917	2,645	남해읍 망운로	하재0			
5	남해	남해	아산	산144-2	산144-17	유	유	1,488	16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6	남해	남해	아산	산144-15	산144-29	유	유	165	145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7	남해	남해	아산	산144-13	산144-28	임	임	5,900	1,096	남해읍 망운로	이태영0			
											황창0			
8	남해	남해	아산	산 144-3	산144-18	임	임	166	78	남해읍 망운로	하순0			
9	남해	남해	아산	산144-12	산144-27	임	임	5,901	2,039	남해읍 망운로	이태0			
											황창0			
10	남해	남해	아산	1083-1	1083-6	장	장	3,868	4	남해읍 망운로	남해섬쪽마늘			
11	남해	남해	아산	산144-11	산144-25	임	임	5,901	1,04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이준0			
12	남해	남해	아산	1078-2	1078-2	도	도	7	7	남해읍 망운로	하재0			
13	남해	남해	아산	1078-1	1078-3	답	답	1,643	7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	이위0			
14	남해	남해	아산	산144-10	산144-24	임	임	5,901	430	경기도 광주시 별원길	김해0			
										남해군 남해읍	하분0			
										남해군 남해읍	김홍0			
										남해군 남해읍	하명0			
										남해군 남해읍	김홍0			
										남해군 남해읍	하운0			
										남해군 남해읍	김홍0			
										남해군 남해읍	정학0			
										남해군 남해읍	김홍0			
										남해군 남해읍	박임0			
										남해군 남해읍	박계0			
										남해군 남해읍	박치0			
										남해군 남해읍	김종0			
										남해군 남해읍	김삼0			
										남해군 남해읍	공홍0			
										남해군 남해읍	김달0			
										남해군 남해읍	박태0			
										남해군 남해읍	이영0			
										남해군 남해읍	송운0			
										남해군 남해읍	박동0			
										남해군 남해읍	박재0			
15	남해	남해	아산	산144-8	산144-8	도	도	1,983	1,983	남해군 남해읍	정영0			
										남해군 남해읍	이관0			
										남해군 남해읍	이성0			
										남해군 남해읍	이도0			
										남해군 남해읍	박재0			
										남해군 남해읍	이수0			
										남해군 남해읍	이백0			
										남해군 남해읍	신웅0			
										남해군 남해읍	이남0			
										남해군 남해읍	최정0			
										남해군 남해읍	박재0			
										남해군 남해읍	박정0			
										남해군 남해읍	이익0			
										남해군 남해읍	이성0			
										남해군 남해읍	박금0			
										남해군 남해읍	이영0			
										남해군 남해읍	김갑0			
										남해군 남해읍	김홍0			
										남해군 남해읍	장희0			
										남해군 남해읍	최동0			
										부산광역시 수영구	박원0			
										남해군 남해읍	염석0			
										남해군 남해읍	조용0			
계								83,667	8,286					

남해군 공고 제2018 - 908호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남해군의 관광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2017. 12. 20.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근거가 제정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27일까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8603,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전화 055-860-8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909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사시설의 사용면적 확대(별표 1)

- 매장묘역 분묘1기당 기준 : 10㎡ (합장할 경우 15㎡)

나. 장사시설 사용자의 사용료 감면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는 전액 감면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681(3853),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전화 055-860-36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및 봉안평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②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사시설의 사용면적(제5조 관련)

장사시설명	기 준	면적 및 안치기수 등	비 고
매 장 묘 역	분묘 1기당	10m ²	합장할 경우 15m ²
봉 안 평 장	1구당	1.35m ²	
봉안당(안락원)	유골1구당	1개 안치단	
담 식 봉안시설	가족형 1개소	12기 안치	
	문중형(소)1개소	24기 안치	
	문중형(대)1개소	48기 안치	
봉 안 묘	1개소당	30m ²	
자 연 장 지	1구당	0.1m 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봉안평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 감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퍼센트 감면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50퍼센트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p>②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 및 봉안평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p>②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 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법령 및 대상자

근거법령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남해군 공고 제2018 - 909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장사업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을 삭제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8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

2). 연락처 : 전화 055-860-3681(3853),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전화 055-860-3681)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으로 하고, “그 밖에 군수가”를 “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u>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 생 략 ></p> <p>② < 생 략 ></p> <p>1. ~ 2. < 생 략 ></p> <p>③ <u>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수급자 증명서</u></p> <p>2. <u>국가유공자 증명서</u></p> <p>3. <u>참전용사자 증명서</u></p>	<p>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u>군수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 현행과 같음 ></p> <p>② < 현행과 같음 ></p> <p>1. ~ 2. < 현행과 같음 ></p> <p>③ <삭 제></p>

[관련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남해군 공고 제2018 - 913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설명회 개최공고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남해군 계획조례」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9일

남 해 군 수

1. 건 명 :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2. 주요 결정(변경) 입안 내용

가. 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1)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2) 규 모 : 50,460㎡

- 지구단위계획구역(온천개발구역) : A=39,988㎡

- 진입도로 : B=12m, L=556.5m, A=10,472㎡

나. 관리계획 변경(결정) 내용 : <붙임1>

다. 관련도서 : 실음생략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 <별첨>

3. 공람기간 : 2018. 8. 9. ~ 2018. 8. 31.

4. 공람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5), 삼동면사무소

5.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가. 개 최 일 : 2018. 8. 20.(금) 오후 2시

나. 개최장소 : 대지포 마을회관

6. 의견제출 방법

가.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붙임1>

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A	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39,988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구	신설 (A = 39,988m ²)	○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5-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법」 제 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세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	대지포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	39,988	39,988	-	신설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대지포온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A = 39,988m ²)	○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5-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법」 제 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계		39,988	100.0	
I. 관광휴양 시설용지	소계	24,203	60.5	
	숙박시설	21,171	52.9	콘도형, 빌라형
	휴양문화시설	1,421	3.6	SPA
	상가시설	843	2.1	상가 및 카페
	판매 및 관리시설	768	1.9	
II.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50	8.2	
	도로	2,621	6.6	
	환경오염방지시설	629	1.6	오수처리시설
III. 녹지용지	소계	12,535	31.3	
	공원	4,993	12.5	
	기타녹지	6,942	17.3	
	원지형보전녹지	600	1.5	대지포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	I	24,203	I-1	삼동면 물건리 산241-11번지 일원	5,020	숙박시설
			I-2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5,405	
			I-3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5,936	
			I-4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810	
			I-5	삼동면 물건리 857-1번지 일원	1,421	SPA
			I-6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20	상가 및 카페
			I-7	삼동면 물건리 산241-10번지 일원	423	
			I-8	삼동면 물건리 산241-1번지 일원	768	판매 및 관리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²)	
-	II	3,250	II-1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2,621	도로
			II-2	삼동면 물건리 843-2번지 일원	629	환경오염 방지시설

3) 녹지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Ⅲ	12,535	Ⅲ-1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289	공원
			Ⅲ-2	삼동면 물건리 산241-3번지 일원	704	
			Ⅲ-3	삼동면 물건리 산241-7번지 일원	944	기타녹지
			Ⅲ-4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3,618	
			Ⅲ-5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644	
			Ⅲ-6	삼동면 물건리 848번지 일원	1,736	
			Ⅲ-7	삼동면 물건리 846번지 일원	519	원지형보전 녹지
			Ⅲ-8	삼동면 물건리 산241-5번지 일원	81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1 ~ 3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권장용도	○ 휴양콘도미니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	I-4	용도
권장용도	○ 휴양콘도미니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5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휴양·문화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권장용도	○ 스파 및 사우나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	I-6, 7	용도
권장용도	○ 상가 및 카페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	I-8			용도
		권장용도	○ 판매 및 관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2)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I-1	용도	지정용도	○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I-2	용도	지정용도	○ 오수처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3) 녹지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II-1, 2	용도	지정용도	○ 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	III-3 ~ 6	용도	지정용도	○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	III-7, 8	용도	지정용도	○ 원지형보전녹지(대지포천)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 도로	556.5	삼동면 물건리 900-3 일원	삼동면 물건리 1080 일원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3-A호선	○ 신설 - B = 12m - L = 556.5m - A = 10,472m ²	○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5-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붙임 2> 의견서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사업명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사업장 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사업자	강병곤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평가서 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필요성(해당되는 곳에 v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8 - 922호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남해군 지역 내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9일

남 해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범죄발생 취약지역 내 발생 우려가 있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8. 9. ~ 2018. 8. 29.(20일간)

4. 공 고 방 법 : 남해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5. 설치 예정지

구분	설 치 장 소		설치 대수	촬영 시간	비고
	위 치	세부 장소			
계	5개소		9대		
신설	삼동면 금송리 531-4	전도마을 진입로 삼거리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미조면 송정리 산 350-9	설리마을 입구 삼거리	2	24시간	고정1, 회전1
신설	설천면 노랑리 498-4	노랑대교 감암마을 진입방면	1	24시간	번호인식 1
신설	설천면 덕신리 1345-4	노랑대교 터널 입구 (남해-하동 진입방면)	2	24시간	번호인식 2
신설	설천면 덕신리 1351-44	노랑대교 터널 입구 (하동-남해 출구방면)	2	24시간	번호인식 2

※ 설치 여건에 따라 인근 지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6. 운영관리 : 남해군 행정과

7. 설치목적 : 방법(어린이보호 포함), 산불방지, 환경감시, 하천 감시, 법규위반 단속 등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남해군청 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중 택일

다. 제출기한 : 2018년 8월 29일까지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 출 처 : 남해군청 행정과

- 1) 주소 : (우) 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 2) 전화 : 055-860-3144
- 3) FAX : 055-860-3737

[붙임]

의견제출서

사 업 명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설치예정위치	삼동면 금송리 525-2 전도진입로 삼거리 외 3개소		

2018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